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(2014.11.4)

##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## 산업건설위원회

# --- 목 차 ---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14 - 74	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	1
2014 - 75	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	3
2014 - 76	거창군 학급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	5
2014 - 77	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	8

#### <의안번호 제2014 - 74호>

##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**님 사 보 고 서**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4. 10. 16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4. 10. 1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0. 24

#### 2. 개정이유

○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제8항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,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 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평가워칙을 정함(안 제4조)
- 나. 평가대상 및 방법, 횟수를 정함(안 제5조)
  - 대상: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서비스 및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등
  - 방법/횟수: 주민만족도 평가, 현장평가, 서류평가/ 연 1회 이상
- 다.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라. 평가 실시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)
  -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
  -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「폐기물관리법」제58조의 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 대행 가능

#### 마. 현장평가단 구성(안 제9조)

- 지역주민,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5명 이상 구성
- 바.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, 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 등(안 제11조·제12조)
  -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대행업체에 시정을 명할 수 있음
  -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·점검
  - 이행이 부진한 경우 보완조치 및 필요한 조치 가능

#### 사. 세부기준(안 제14조)

○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(「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」을 따르도록 규정함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제8항 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 을 구축하고,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### <의안번호 제2014 - 75>

## \_\_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- **심 사 보 고 서**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. 10. 21.

나. 제 출 자 : 표주숙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 : 2014. 10. 21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0. 24

#### 2. 개정이유

- O 거창군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단위 거주 어르신들 의 교통 이동권 불편을 해소하고
- O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방안에 대비 예산절감 기대 및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함

#### 3. 주요내용

- O "부르미택시", "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" 용어 정의 (안 제2조)
  -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.
  -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.
- O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을 규정 (안 제3조)
- O 부르미택시 비용의 신청 및 지원결정 규정 (안 제4조, 제5조)
  - 해당마을 ~ 읍소재지: 1인당 농어촌버스요금 부담
  - 해당마을 ~ 면소재지: 1대당 100원 부담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O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단위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이용권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 방안과 비교할 때 예산절감 기대 및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### <의안번호 제2014 - 76호>

###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. 10. 16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14. 10. 16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0. 24

#### 2. 민간위탁 이유

- 「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」의 물류 ·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,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.
-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「거창군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와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의거 식자재 조달대행 사업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

#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연 왕

○ 시 설 명: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

○ 위 최: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-12번지

- 규 모: 연면적 1,345 m² (지상2층)
  - 1층(1,054m²): 입하장, 냉장·냉동 창고, 소포장실, 출하장 등
  - 2층( 291 m²): 사무실, 회의실, 식당, 탈의실 등

#### 나. 위탁사무

- 시 설: 학교급식지원센터 1, 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
- 운 영: 38개교(10,000명) 식재료 조달대행 업무

#### 다. 그간의 추진사항

-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도 지원사업 선정: 2010. 1
-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: 2011. 10. 4
-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: 2011. 11. 2
-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동의(안) 가결: 2012. 4
-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선정: 2012. 4 (거창원협)
- 23개교(4,025명) 식자재 조달대행(초등): 2012. 5 ~ 2012. 8
- 36개교 식자재 조달대행(중·고등 추가): 2012. 9 ~ 2013. 2
- 38개교(10,000명) 식자재 조달대행(유치원 추가): 2013. 1~

#### 라. 운영계획

- 재 위탁 운영
  - 수탁기관: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(대표 윤수현)
  - 위탁기간: 2015년 01월 01일 ~ 2015년 12월 31일까지※ 단 2016년 이후 수탁업체는 2015년 상반기 공모로 선정
- 위탁운영 방식
  - 공급품목의 가격, 생산 공급업체 선정, 이익금의 분배조건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(협약서 작성 및 공증)
  -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대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등 실무 일체 위탁

#### 마. 소요예산 : 없음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」의 물류 ·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 로 공급하기 위한 민간위탁으로서
- O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에 위탁이 2014년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년 동안 재위탁 하려는 사안으로, 재위탁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### <의안번호 제2014 - 77호>

###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**심 사 보 고 서**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. 10. 16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14. 10. 16

라. 산정 및 의결일자 : 2014. 10. 24

#### 2. 민간위탁 이유

- 「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」의 물류·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.
- O 근거: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#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연 왕

- 시 설 명: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
- 위 최: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
- 규 모
- 부 지: 36,376 m²
- 연 면 적 r 당초: 8,219 m²(선별 3,499 m², 저장 1,780 m²(1,440 톤) / 기타 2,940 m²)

└ 보완: 2,874 m²(저장 1,467 m², 선별 1,171 m², 기타 236 m²)

○ 시설내역: 선별기(1일 50톤 / 연간 10,000톤 처리) / '13년도 6,366톤

#### 나. 위탁사무

- 시설: 유통센터 토지·건물·기계·물류기기 유지관리
- 운영: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

#### 다. 운영계획

- 재위탁 운영
  - 수탁기관: (주)NH유통 (대표 신인재)
  - 위탁기간: 2015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까지(4년)
- 위탁운영 방법
  - 시설물 관리,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 통합운영
  -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
  -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,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
  -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,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

#### 라. 소요예산

○ 없음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㈜NH유통에서 지난 5년(2009년~2014년)간 위탁 운영한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위탁기간의 만료됨에 따라, 2014. 10. 17일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 재위탁으로 심의된 사안으로 지금까지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㈜NH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